구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사항:: ACA, ACF, JFA, JFA-RA, JHC, JHC-RA, JHF, JHF-RA

책임 기관: Superintendent of Schools; Deputy Superintendent;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Chief of District

Operations

MCPS 학생의 Title IX 성희롱 조사 Investigation of Title IX Sexual Harassment of MCPS Students

I. 목적

Title IX 성희롱 불만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 제공하기 위하여

II. 정의

- A. "성적 위법행위(sexual misconduct)" 및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의미는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ACF, 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B. *업무일(Workday)*은 토요일, 일요일, 법적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MCPS 행정사무실이 업무를 하는 날입니다.

III. 행정절차

- A. 학생이 이성 또는 동성의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에 관계없이 부적절하고 성적 위법 행위(sexual misconduct) 및 성희롱(sexual harassment) 은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Policy ACF, 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정책에 위배됩니다.
- B. 학교 교직원과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 의 직원이 성적 위법행위 및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학생과 가족에게 지침 지원/도움 및 옹호를 제공합니다.

- C. 학생 복지 및 규정 준수는 다음과 같이 이 규정의 시행을 조정합니다:
 -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조치에 대한 정보와 성적 위법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배포합니다.
 - 2.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 문제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지침 개발을 지원합니다.
 - 3. 성적 학대와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과 학생 대면자료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건강 지식 이해력(health literacy) (예: 대인 의사소통, 자기관리,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옹호) 및 개인 신체 안전을 위한 연령에 맞는 교육
 - 4.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 문제의 조사와 기록을 주관하고 MCPS 에서의 직원과 학생의 성희롱 불만신고에 관해 교육감에게 이를 알립니다.
 - 5. 성적 위법행위 및 성희롱에 관한 불만신고를 모니터합니다.
 - 6. 개인정보 관리 요건에 적합하게 보고, 불만신고, 차후관리 행동의 기록관리 관리 및 유지.
 - 7. 다음을 포함하는 성적 위법 행위 및 성희롱 보고를 위한 분기별 교육위원회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a) 사건 수 및 형태
 - b) 불만신고와 해결절차의 평가 및 향상
 - c) 트레이닝 통계와 스케줄
 - d) 모든 MCPS 학교와 사무실, 업무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업무환경 평가
 - e) 교육위원회 Policy ACF, 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와 Board Policy ACI, 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 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MCPS 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활동

IV. 신고 절차

- A. 성적 위법행위/성적 비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MCPS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문제를 신고와 조사 절차를 인도해주고 가능한 지원조치를 알려줄 학교장 또는 기타 MCPS 교직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합니다.
 - 1.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직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 를 사용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학생의 학교장 또는 대리인에게의 신고를 도울 수 있습니다.
 - 2. MCPS Form 230-3을 학생, 학부모, 후견인 또는 학생과 가까운 친척, 학교 교직원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이 양식을 학교장, 학교장 대리 또는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 drop box (SWC@mcpsmd.org)에게 제출합니다.
 - 3. Title IX 성희롱 신고(sexual harassment reporting)는 Title IX 성희롱 이메일 투서함(Title IX sexual harassment drop box) Title IX@mcpsmd.org 로 할 수 있습니다.
 - 4. 교직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교직원은 학생이 MCPS 양식 0109.22 EGPS, *Title IX Discrimination Formal Complaint* 정식/공식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돕습니다.
- B. 사건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참여 또는 조사에 협조한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 C. MCPS 는 이와 같은 신고의 조사와 해결에 대해 적절한 법과 MCPS 의 책임에 따라 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 조사, 적용합니다.

V. 조사

- A. 성적 위법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조사
 - 1. 성적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Board Policy JHF MCPS Regulation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Form 230-36,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협 행위 신고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 2. 결과와 적절한 조치는 가능한 한 실행성 있는 방법으로 적시에 이루어지며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 에 보고 되도록 합니다.
- B.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불만신고 사항 조사

미 교육부 2020 년 지침(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guidance)은 Title IX 에 해당하는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신고 사항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금지한 조사절차를 수립했습니다.

- 1.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불만신고 사항의 조사요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MCPS Form 0109.22 EGPS, *Title IX Discrimination* Formal Complaint 를 작성하여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TitleIX@mcpsmd.org)
- 2.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신고의 의무 기각 및 임의 기각을 금하고 있습니다:
 - a) 공식 불만신고의 의무적 기각
 - (1)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다음의 경우 공식 불만신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a) 만약 불만제기에서 주장되는 행위가 Title IX 성희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도 해당 또는
 - (b) 그 행위는 교육 프로그램/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 (2) 공식 불만신고의 의무 기각은 MCPS Regulation JHF-RA,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the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또는 기타 해당되는 규칙 하의 행동일 경우는 기각에서 제외됩니다.
 - B. 공식 불만신///고의 재량적 기각
 - (1)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공식 불만신고를 다음의 경우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ACF-RA

- (a) 신고자가 공식 불만신고를 철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통지하는 경우 또는,
- (b) 대응자가 더 이상 MCPS 에 다니거나 재직 중이지 않을 경우 또는,
- (c) 구체적인 상황이 MCPS 가 공식 불만신고이나 주장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 3. 공식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지명자는 알려진 당사자에게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조사관을 지정합니다.
- 4. 조사관은 책임에 따라 결정에 도달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당사자들은 진술, 목격자 및 기타 증거를 포함하여 조사관에게 증거를 제공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 5. 조사 종결 시 책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6. 조사 보고서 작성에 앞서 조사관이 각 당사자와 당사자 어드바이저에게 의혹과 직접 관련된 증거를 송부하는 증거 심사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1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7. 증거 검토기간이 끝나면 조사관은 서면 답변서를 검토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8.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면 당사자들과 당사자 어드바이저는 10일 동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9. 조사 보고서 검토 기간 후, 학교장 또는 학교장 대리는 조사 보고서와 서면 답변을 평가하고, 이 문서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책임 결정을 내게 되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권명사항을 제출합니다. 결정은 각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보내집니다.
- 10. 주장되는 행위가 Title IX 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

기준의 우위성을 사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C. Title IX 성희롱 불만신고의 비공식적 해결방법
 - 1. 책임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당사자는 공식적인 불만 신고에 대한 비공식적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비공식 해결에의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양 당사자는 비공식적인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서면으로 이를 동의해야 합니다.
 - 3. 직원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불만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대응조치

A. 성희롱의 어떤 형태는 형사처벌을 야기하거나 아동학대의 범죄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MCPS Regulation JHC-RA,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와 법집행기관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¹ MCPS 의 모든 내부 조사는 외부 형사기관의 조사와 협력해야 하며 외부조사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VII. 이의 제기

- A. 성희롱에 관한 결정에의 이의제기는 MCPS Regulation KLA-RA, *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에 있는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B. Title IX 성희롱 결정에의 이의제기
 - 1. 본인 또는 지명자의 책임 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제기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 10 일 업무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3.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책임 또는 공식적인

¹ 전체 제목: 법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고 프로토콜은 2022 년 4 월 4 일 *학교 기반 사건에 대한 Community Engagement Officer Program 및 기타 법 집행 대응에 관한 Montgomery 카운티 경찰서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및 기타 기관 간의 양해각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불만신고의 기각에 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a) 절차상의 부정행위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b) 결정 당시 또는 공식 불만신고 기각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책임과 관련하여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 c)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또는 의사결정자가 문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 4. 훈련된 청문관이 배정됩니다.
- 5. 이의제기를 접수할 경우, 청문관이 이를 반대측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6. 양측 모두 결정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7.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청문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a) (c)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조사 문서 및 주장을 검토합니다
 - b) 항소 결과와 결과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합니다. 그리고,
 - c) 양쪽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교육위원회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 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30 일 달력일 이내의 이의제기에 관한 주법의 권리를 양쪽에게 알립니다.

VIII. 정보의 전달 및 배부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 비행과 성희롱을 다루는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및 규칙, 성적 위법행위와 성희롱이 정의되는 방법, 성적 위법행위나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연락처정보 및 도움을 요청할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출판 및 배부합니다.

정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하게 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워크숍 트레이닝과/또는 온라인 모듈,

- B. 팸플릿
- C. 게시판
- D. 지원서
- E. 안내 그리고/또는
- F. 적절한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

IX. TITLE IX 트레이닝

- A.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의사 결정자 및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신고의 비공식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모든 사람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 B. 트레이닝에는 성희롱의 정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범위, 해당되는 경우, 청문회, 항소 및 비공식 해결과정을 포함한 Title IX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예측, 이해의 충돌, 그리고 편견을 피하는 방법을 포함한 공정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 트레이닝 자료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닝 자료는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신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판결을 촉진하게 됩니다.
- D. 트레이닝 자료는 MCPS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as amended;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Memorandum of Understanding²;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규정 변경사: 새 규정 1993 년 2월 17일; 2006 년 2월 22일 갱신; 2017 년 7월 31일 갱신: 2023 년 2월 1일 갱신.

²전체 제목: 법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고 프로토콜은 2022 년 4월 4일 *학교 기반 사건에 대한 Community Engagement Officer Program 및 기타 법 집행 대응에 관한 Montgomery 카운티 경찰서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및 기타 기관 간의 양해각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Academic Officer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 240-740-3230 RACU@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 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